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6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지정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그 밖에 기존 본문 중 오탈자를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체화

나. 안 제3조(구성) 제2항 개정

-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도록 개정.

다. 안 제5조제3항(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 라. 안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기존 본문 중 오타자를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마. 안 제8조제1항(간사) 간사의 임명권자를 군수로 규정
- 바. 안 제9조(회의록) 간사가 작성하는 회의록의 작성사항을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제1항 중 “당연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을 “소집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안전에는”을 “심의안전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① <u>산사태 실태조사 결과</u> 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제2조(기능) <u>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② <u>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해제한다.</u>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u>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1명을 둔다.</u>	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u>
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u>	②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 1. <u>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산사태, 재난관련업무 소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u>

현행	개정안
③ <u>당연직 위원은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과장, 재난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 ④ <u>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관련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u>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u>당연직</u>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생략)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u>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u> 3. <u>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u>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u>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u>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 ②(현행과 같음) ③ ----- ----- ----- 1.(현행과 같음) 2. <u>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u>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 ----- <u>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u>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u>소집할 경우에는</u> ----- -----
④(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u>심의안건에는</u>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u>심의안건은</u> ----- ----- ----- -----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u>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u>	제8조(간사) ①----- ----- <u>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u>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록) <u>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u>	제9조(회의록) <u>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 1. <u>회의일시 및 장소</u> 2. <u>심사사항</u> 3. <u>회의 진행 상황</u> 4. <u>위원 발언요지</u> 5. <u>심의 결과</u> 6.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